

서울녹색당 임시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 일 시 : 2024년 1월 29일(월) 오후 8:00
- 장 소 : 온라인

◆ 회의 순서 ◆

1. 평등문화약속문 읽기
2. 전 회의록 확인
3. 안건
 - 3.1. 임시 공동운영위원장 지명의 건(박제민 대표발의)
 - 3.2. 22대 총선 기간 중 서울운영위원회 회의 중단의 건(박제민 대표발의)
 - 3.3. 기초지역당 및 총회준비위원회의 총선대책위원회 전환의 건(김유리 대표발의)
 - 3.4. 제105차 전국위원회 보고의 건(김유리 대표보고)
 - 3.5. 선거연합정당 출범식 참여 결의의 건(김유리 대표발의)
4. 공지사항
 - 4.1. 주요 일정
 - 4.2. 다음 회의

◆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 ◆

| 구성 | 이름 | 비고 |
|---------|--------|-----------------------|
| 공동운영위원장 | 김유리 | 2022.10 - 2023. 9. 의장 |
| 공동운영위원장 | 박제민 | 2023.10 - 2024. 9. 의장 |
| 정책위원장 | 김서린 | |
| 관악동작 | 남준희 | 관악동작운영위원회 대표로 참여 |
| 마포 | 이숲/김혜미 | |
| 용산 | 박대신 | 용산운영위원회 대표로 참여 |
| 은평 | 박형준 | |
| 종로중구 | 박수영 | 종로중구운영위원회 대표로 참여 |
| 서울사무처 | 조준희 | |
| 재적 / 참석 | 9 / | 사고: |

◆ 녹색당 회의규정 ◆

2015년 8월 29일 제36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8년 6월 24일 제63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20년 12월 20일 제8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1년 11월 7일 제96차 전국위원회 개정

녹색당 당규 6.회의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당 내부 회의의 운영에 관해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당헌이나 당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당 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에 적용한다.

제2장 개회와 폐회

제3조(의사정족수)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4조(재적의 총수) ① 재적자의 수는 회의 개최일 현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총 수에서 사고자의 수를 제하여 산출한다.

② 사고자의 수는 결혼, 구속, 수배, 형의 집행, 입원, 직계존비속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 등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자의 수이다. 단, 회의 개최 전에 의장이 사고자의 성명과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만 그 수에 포함한다.

제5조(성원보고) ①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원을 보고하여 재석자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했음을 밝혀야 한다.

② 성원보고를 할 때는 회의성원 총수, 사고자의 수, 재적자의 수, 의사정족수, 재석자 수를 차례로 공표한다.

제6조(개회선언) 성원보고에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회의 일시와 회의의 공식 명칭을 밝히고, 개회를 선언한다.

제7조(유회) 의장은 사전 공고된 시각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8조(정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의장이 정회를 선포할 때에는 속개할 시간을 함께 공지해야 한다.

제9조(폐회) 회순에 따른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을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끝낸다.

제3장 안건

제10조(당 대의원대회) ① 정기 대의원대회의 안건과 안건자료는 대의원대회 1개월전까지 공고되어야 한다. 다만 임시 대의원대회의 안건과 안건자료는 7일 전까지 공고되어야 한다.

② 정기 대의원대회의 안건 및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서명을 받거나 당원 총수의 1%에 해당하는 당원의 서명을 받아 정기 대의원대회 1주 전까지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시 대의원대회의 경우에는 회의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의 진행중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석인원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11조(전국위원회 안건 공고) ① 공동대표는 전국위원회의 안건을 회의 7일전까지, 회의자료는 회의 3일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② 전국위원은 전국위원 5인 이상, 또는 안건 공고일 기준 선거권을 가진 당원 1%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공동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회의 진행중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석인원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12조(안건 철회) 제10조 제2항과 제11조 제2항의 안건 발의자는 찬성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제13조(일사부재의)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제4장 발언

- 제14조(발언 신청과 허가) ①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손을 들고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한다.
② 다른 성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발언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참관인은 참석자들의 의제에 관한 발언이 끝난 후에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발언시작 및 회수의 제한 등) ①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발언을 시작한다.

② 발언자는 동일의제에 대하여 1인당 2회의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언의 회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질의에 응답할 때
2.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3. 의장의 허가를 구했을 때

제16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발언자는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② 특별히 5분 이상의 발언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장 안건 토의

제17조(회순) 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를 정하여 회순으로 발표하고,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확정한다.

제18조(안건 상정)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상정한다.

제19조(제안설명) 안건 상정 직후 의장이 지명하는 자 또는 안건 발의자 중 1인이 제안 설명을 한다.

제20조(질의와 토론) 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수 있다.

② 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한다.

③ 질의와 토론의 종결 여부는 의장이 회의참가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한다.

제6장 의결

제21조(의결 정족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안건은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표결 시작) 표결을 시작할 때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함께 표결 시작을 선포한다.

제23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원칙적으로 실명으로 한다.

② 실명표결의 경우, 의장은 모든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회의참가자의 실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낭독한 후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한다.

제25조(의사록 및 회의결과) 의사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회의결과

가. 회의 일시와 장소

나. 출결 상황 : 재적자 수, 사고자 수와 명단, 참석자 수와 명단, 불참자 수와 명단

다. 회의 진행자와 기록자

라. 회순

마.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서류

바. 의결 내용, 의결 방법, 표결 결과(찬반자 실명포함)

2. 회의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제26조(의사록의 작성과 보관)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회의 참석자의 동의하에 서기를 지명한다.

② 서기는 의사록 작성을 위한 녹취와 기록을 담당한다.

제27조(의사록의 공개) ① 의장은 회의일 7일 이내에 회의결과와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을 당원에게 공개한다.

② 공개는 당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③ 각 회의 참석자 2/3의 의결에 따라 특정안건 혹은 특정회의 전체에 대한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개대상자의 범위 및 비공개 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비공개하거나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전국위원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녹색당 회의규정, 끝.)

1. 녹색당 평등문화 약속문

- 1) 우리 모두는 녹색당의 주체이며, 나이, 성별, 성지향, 성별정체성, 장애여부,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다.
- 2) 녹색당 당원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 3) 당내 평등문화를 훼손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공동으로 대처한다.
- 4) 당 활동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어를 사용하고, 상호 동의 없이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 5) 나이, 성별, 성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관한 고정관념이 담긴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6)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주의한다.
- 7) 외모와 관련된 발언을 주의한다.
- 8)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은 하지 않으며, 혐오 발언에 대해서 항의한다.
- 9) 연애와 결혼은 필수가 아님을 유의한다.
- 10) 평등문화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을 시에 즉각 중단한다.
- 11) 녹색당의 당내 행사의 주관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경고하고 제지한다.
- 12) 녹색당의 당내 행사의 주관자는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녹색당 평등문화 약속문, 끝.)

2. 전 회의록 확인

서울녹색당 제133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2024년 1월 12일(금) 오후 7:30
- 장소: 녹색당사
- 재적: 9명
- 참석: 6명 - 김서린(정책), 김유리(서울), 남준희(관악동작), 박제민(서울), 이숲(마포), 조준희(서울사무처)
- 참관: 1명 - 임천수(강서양천)
- 사고: 0명
- 불참: 3명 - 박대신(용산), 박형준(은평), 한박수영(종로중구)
- 진행: 박제민 공동운영위원장
- 기록: 조준희 사무처장
- [회의 자료 보기](#)

1. 개회선언

- 재적 9명 중 재석 6명으로 의사정족수 성립함. (개회 후 6명 참석)

2. 평등문화약속문 낭독

3. 전 회의록 확인

▶ 결과를 확인함.

4. 활동보고

▶ 보고를 확인함.

5. 자유발언

- 김서린 정책위원장 자유발언

6. 논의안건

6.1. 임시 전국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김유리 대표보고)

- 주문사항: 임시 전국위원회 결과를 보고하니 확인하여 주십시오.
 - ▶ 원안가결(전원합의)

6.2. 서울녹색당 제22대 총선 지역구 후보 선출 일정 보고의 건(조준희 대표보고)

- 주문사항1. 서울 마포구갑 전략지역구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진행상황을 보고하니 확인하여 주십시오.

▶ 원안가결(전원합의)

6.3. 2024년 제12차 대의원대회 진행사항 보고의 건(조준희 대표보고)

- 주문사항: 2024년 제12차 대의원대회 진행사항을 보고하니 확인하여 주십시오.

▶ 원안가결(전원합의)

▶ 재석인원 중 2/3 이상 동의하여 안건 6.3.을 비공개 처리함(사유: 논의 내용 중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비공개함).

6.4. 지역모임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박제민 대표발의)

- 주문사항: 지역모임 총회준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원안가결(전원합의)

6.5. 제120차 회의 결정 사항(비공개) 후속 조치 보고의 건(박제민 대표보고)

- 주문사항: 제120차 회의 결정사항 후속 조치를 보고하니 확인하여 주십시오.

▶ 원안가결(전원합의)

▶ 재석인원 중 2/3 이상 동의하여 안건 6.3.을 비공개 처리함(사유: 안건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비공개함).

7. 공지사항

- 정기 전국위원회 안건 사전 논의를 위한 서울 운영위원회 모임
 - 1월 18일(목) 오후 8:00, 온라인
- 제134차 운영위원회
 - 추후 공지

8. 폐회 선언

(끝)

3. 안건

3.1. 임시 공동운영위원장 지명의 건(박제민 대표발의)

- 주문사항: 임시 공동운영위원장을 선임해주십시오.
- 안건설명:
 - 현 공동운영위원장이 선거연합정당 구성 및 추진에 참여함에 따라, 서울녹색당의 법적 대표로서 임시 공동운영위원장을 선임할 필요성이 발생
 - 임시 공동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2월 2일(금)부터 4월 30일(화)까지로 함.
 - 임시 공동운영위원장 임기 중 활동 및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전국위원회 참여(비례대표 후보자 인준의 건) 등
 -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2월 24일)
 - 그 외 제11조(공동운영위원장) 서울녹색당 규약에 따름.

※ 참고 <서울녹색당 규약>

제11조(공동운영위원장) ⑤ 공동운영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호선을 통해 지명받은 자가 공동운영위원장의 직을 대행한다.<개정 2017.02.18>

3.2. 제22대 총선 기간 중 서울운영위원회 회의 중단의 건(박제민 대표발의)

- 주문사항: 선거운동 집중을 위해 운영위원회 회의를 휴회하는 것을 결의해주십시오.
- 안건설명:
 - 선거운동 집중을 위해 2~4월 운영위원회를 휴회할 필요성이 있음.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운영위원회 휴회를 결의한 바 있음.
 - 휴회 기간은 결의 후 2024년 5월 9(목)일까지로 함.
 - 단, 긴급한 사안이 있을 시 임시 운영위원장 및 사무처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3.3. 기초지역당 및 총회준비위원회의 총선대책위원회 전환의 건(김유리 대표발의)

- 주문사항: 총선 승리의 전당적 결의를 목적으로 각 기초지역당과 총회준비위원회가 총선대책위원회로 전환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결의해주십시오.
- 안건설명:
 - 전국의 광역시도당 및 기초지역당 모두 비례대표 선거와 마포구 갑 전략지역구 선거를 지원하려면 총선에 맞는 조직의 전환이 필요함.
 - 지역당에서 선거에 결합할 수 있는 안의 논의를 주도해주길 요청함.

3.4. 제105차 전국위원회 보고의 건(김유리 대표보고)

- 주문사항: 제105차 전국위원회 결과를 보고하니 확인하여주십시오.
- 안건설명: [제105차 전국위원회 결과](#)

3.5. 선거연합정당 출범대회 참여 결의의 건(김유리 대표발의)

- 주문사항: 투표 가결시, 2월 3일 개최할 선거연합정당 출범대회에 서울당원 50명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 조직을 결의해주십시오.
- 안건설명:
 - <선거연합정당 전국위원회 및 출범대회>
 - 전국위원회: 2월 3일(토) 오후 1:3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출범대회: 2월 3일(토) 오후 3: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전국위원회에는 특별입당당원 참여 예정
 - 출범식에는 50여명의 서울 당원의 조직 참여가 필요

(안건, 끝.)

6. 공지사항

6.1. 다음 회의

- 제134차 운영위원회
 - 2024년 5월 10일(금) 오후 7:30, 녹색당

(공지사항, 끝.)

(회의자료, 끝.)